

기업 지배구조 헌장

JEJUair

전 문

주식회사 제주항공(이하 회사)은 사랑과 존경을 바탕으로 앞서가는 사고, 기술, 경영으로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창조하여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을 지향한다.

이러한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 구축을 위한 ‘제주항공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제 1 장 주주

제 1 조 (주주의 권리)

- ① 주주는 상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한 주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사의 존립 및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③ 회사는 주주가 최대한 참가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를 결정하고,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
- ④ 주주는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회사는 주주가 자신의 의결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 2 조 (주주의 공평한 대우)

- ① 주주는 보통주 1 주마다 1 의결권을 가지며,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특정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 ② 주주는 회사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회사는 공시의무가 없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도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제공한다.
- ③ 주주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위법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제 3 조 (주주의 책임)

- ①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가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회사 발전을 위하여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노력한다.
- ②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는 회사와 모든 주주의 합리적인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한다.

제 2 장 이사회

제 4 조 (이사회의 기능)

- ① 이사회는 회사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기능과 경영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단, 법령·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는 주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 5 조 (이사회의 구성 및 이사 선임)

- ① 이사회는 경영 활동에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한 규모를 갖추고, 이사회 내에 설치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 ③ 이사회는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다양성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되어야 한다.
- ④ 회사는 주주가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판단 시간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6 조 (이사회의 운영)

- ① 원칙적으로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고, 필요시 임시 이사회를 수시 개최할 수 있다.
- ② 원활한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이사회 규정을 둔다.
- ③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유지·보존한다.
- ④ 회사는 개별 이사의 활동 내역(예: 이사회 출석률, 주요 공시대상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을 공개한다.
- ⑤ 이사는 모든 이사의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 가능한 원격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제 7 조 (이사회 내 위원회)

- ① 이사회는 특정 기능과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내부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은 각 위원회의 규정에 명시하도록 한다.
- ③ 위원회는 결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결의는 이사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 8 조 (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회사와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추구하여야 하며,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이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 9 조 (이사의 책임)

- 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사에게 악의나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제 3 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② 이사가 경영판단을 하는 과정에 있어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당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신중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러한 이사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 ③ 회사는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능한 자를 이사로 영입하기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 3 장 감사기구

제 10 조 (감사위원회)

- ① 감사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하여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3 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위원 중 1 인 이상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관련 법령 및 정관, 이사회 규정,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고, 필요시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감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매 분기 1 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시 담당 임원 및 외부 감사인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토의사항과 결의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제 11 조 (외부감사인)

- ① 외부감사인은 회사와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법적, 실질적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②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에 설명하여야 한다.
- ③ 외부감사인은 부주의한 회계감사로 인해 감사 대상 기업 및 기타 정보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④ 외부감사인은 감사 시 감사 대상 기업의 부정행위 또는 위법행위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외부감사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감사 대상 기업의 존속 가능성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
- ⑥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 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이해관계자

제 12 조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

- ① 회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존중하고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② 회사는 소비자 보호, 환경 보호 등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노력한다.
- ③ 회사는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 ④ 회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준수함으로써 공정한 시장 질서의 확립을 촉진하며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 ⑤ 회사는 채권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병, 감자, 분할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채권자 보호 절차를 준수한다.
- ⑥ 이해관계자가 주주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자 및 주주로서의 각각의 권리는 보호되고 행사될 수 있어야 한다.

제 13 조 (이해관계자의 경영감시 참여)

- ① 채권자의 경영감시 형태와 수준은 회사의 특성에 따라 관련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② 근로자의 경영참가 형태와 수준은 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 ③ 회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자는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제 5 장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

제 14 조 (공시)

- ① 회사는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사항을 성실하게 공시하고, 이외에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성실히 공시한다.
- ② 회사는 정기 공시 이외에 중요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적시에 공시한다.
- ③ 회사는 공시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이해관계자가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공시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회사의 중요 정보가 공시책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내부 정보 전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⑤ 회사의 대표이사와 공시책임자는 재무보고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인증하여야 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헌장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2022 년 7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참고] 제 ·개정 이력

제정	2022. 7.4.
개정	-

끝.